

---

---

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
**전략 환경영향평가 (재협의를)**  
(평가 항목.범위 등의 결정 내용)

---

---

2020. 3.

 **진도군**

# 목 차

<b>제 1 장 계획의 개요</b> .....	1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.....	2
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.....	2
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.....	2
1.4 계획의 내용 .....	3
<b>제 2 장 대상지역 설정</b> .....	8
2.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설정 .....	9
2.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.....	9
<b>제 3 장 토지이용구상</b> .....	11
3.1 주거용지 .....	12
3.1 공공시설용지 .....	12
3.1 토지이용계획 .....	12
<b>제 4 장 대안의 설정</b> .....	14
4.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.....	15
4.2 대안의 설정 .....	16
<b>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</b> .....	18
5.1 평가항목 설정 .....	19
5.3 환경영향 예측·분석기법 및 관련 자료 .....	20
<b>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</b> .....	21

# 제 1 장

---

## 계획의 개요

-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- 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- 1.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
- 1.4 사업의 내용

## 제 1 장 계획의 개요

###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진도군 군내면 나리 일원에 위치하는 “신기지구 전원마을”은 당초 52세대로 계획되어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(2017.03.31.)하였으나, 금회 100세대로 수용계획이 증가됨에 따라 마을정비구역 지정(변경)을 추진하고자 함.
- 또한,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 거단지를 조성하며, 아울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풍요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사업은 『환경영향평가법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.

<표 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관련규정

법적 실시근거	내 용
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(재협의)	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 1.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(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)	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(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). - 당초 40,304㎡ → 변경 49,597㎡ (37.9% 증가) (당초 대비 증가 15,275㎡, 감소 5,982㎡)

자료) 환경영향평가법, 2020. 01, 환경부

### 1.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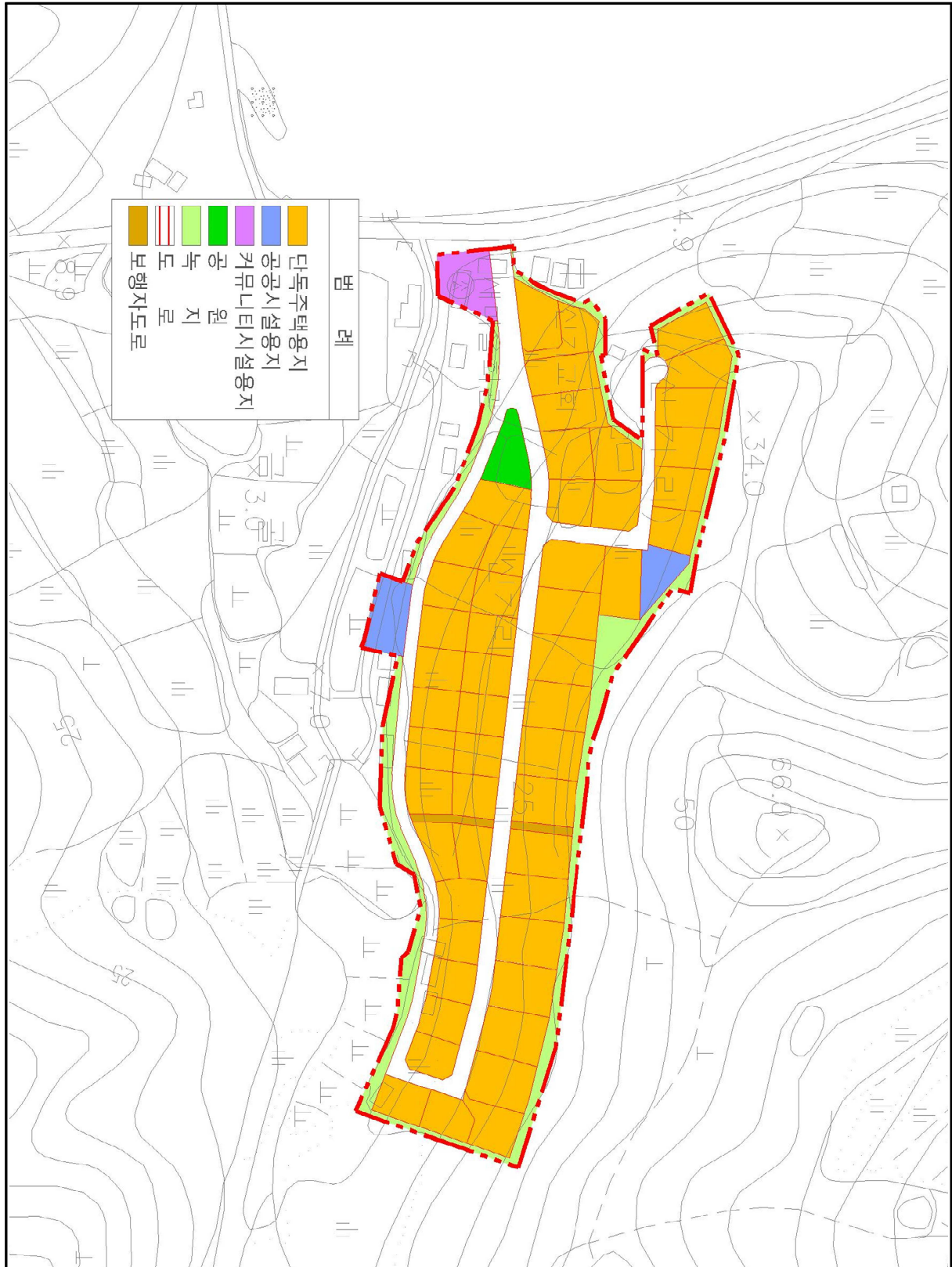
- 2018. 12. 13 :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(영산강유역환경청 → 전라남도)
- 2020. 02. 03 :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
- 2020. 03. 02 :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(변경) 신청
- 2020. 03. 17 :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등의 공개(14일간)
- 2020. 03. :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 초안보고서 제출(예정)
- 2020. 04. : 전략환경영향평가(재협의) 초안보고서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(예정)

### 1.4 계획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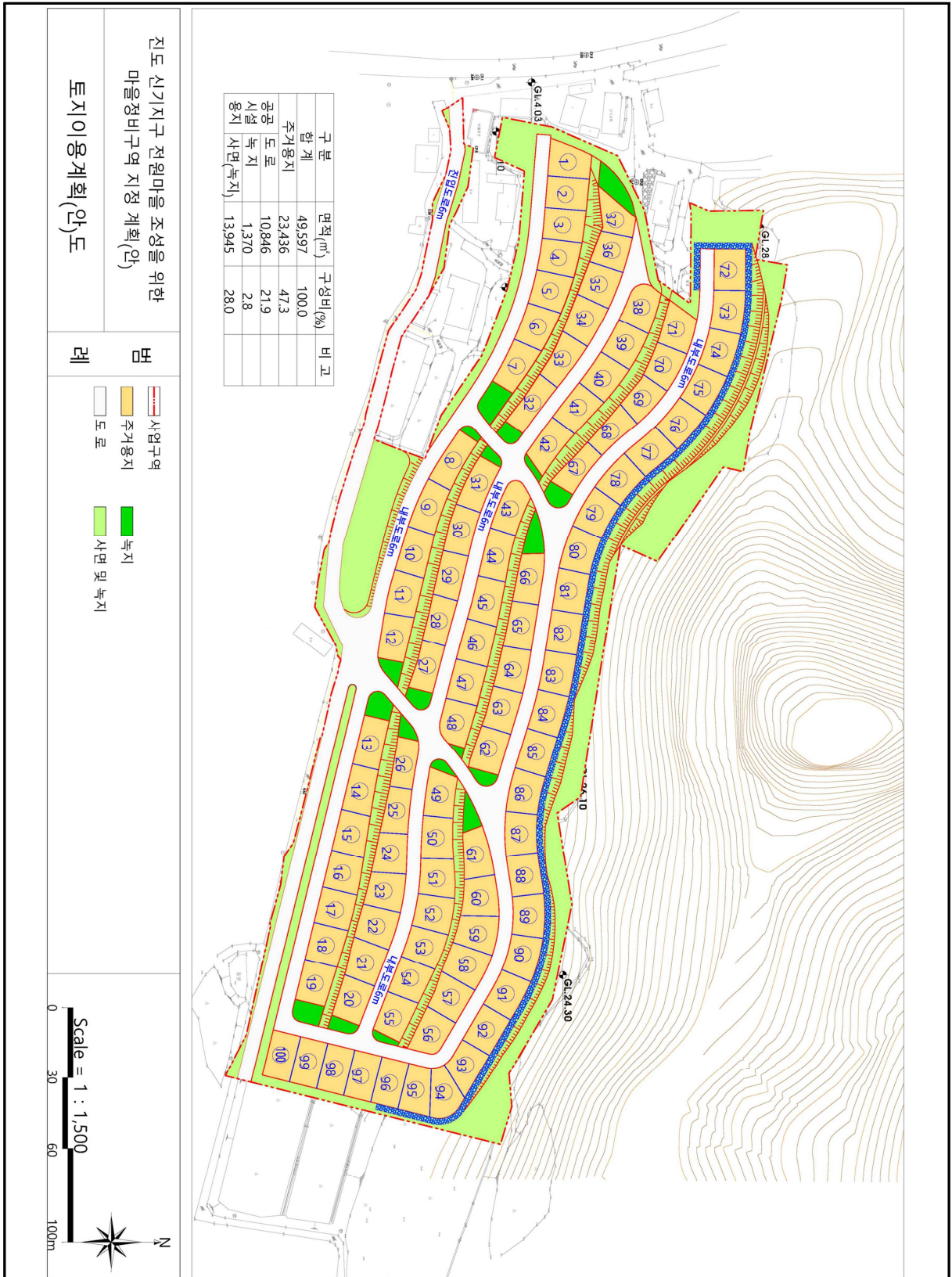
- 가. 과 업 명 :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
- 나. 위 치 :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403-15번지 일원
- 다. 소요예산 : 12,505백만원
- 라. 사 업 자 : 진도군
- 마. 승인기관 : 전라남도
- 바. 과업기간 : 2015년 ~ 2021년
- 사. 편입면적 : 49,597㎡

구 분	당초		변경	
	면 적(㎡)	구성비(%)	면 적(㎡)	구성비(%)
합 계	40,304	100.0	49,597	100.0
주 거 용 지	26,439	65.6	23,436	47.3
도 로	6,607	16.4	10,846	21.9
녹 지	4,671	11.6	1,370	2.8
사 면 ( 녹 지 )	-	-	13,945	28.0
배 수 지	444	1.1	-	-
하 수 처 리 시 설	628	1.6	-	-
커 뮤 니 티 시 설	703	1.7	-	-
공 원	539	1.3	-	-
보 행 자 도 로	273	0.7	-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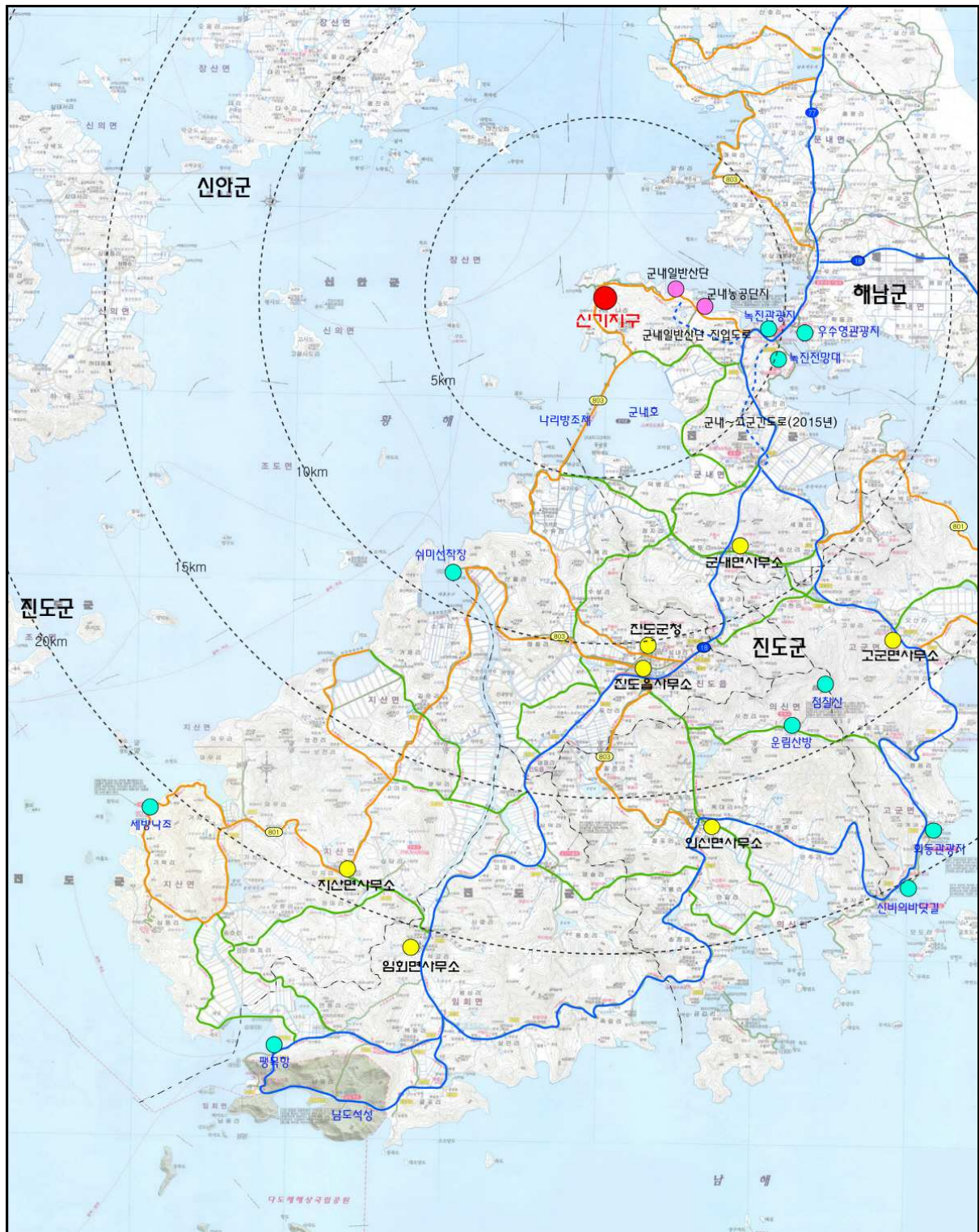
<그림 1-2> 당초 토지이용계획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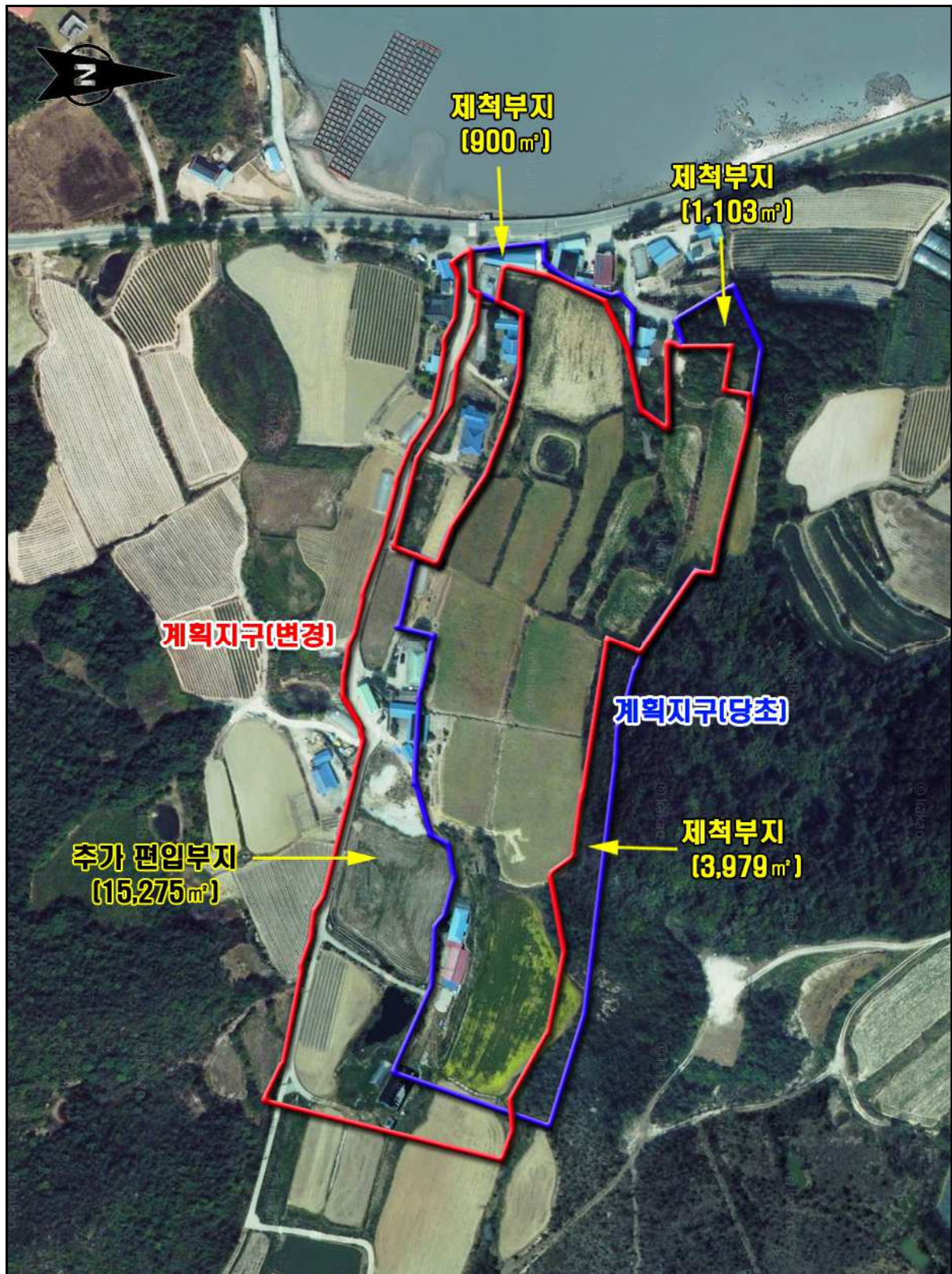
<그림 1-3> 금회 토지이용계획도



<그림 1-4> 계획지구 위치도



<그림 1-5> 계획지구 위성사진



# 제 2 장

---

## 대상지역 설정

- 2.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설정
- 2.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

##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

### 2.1 행정구역상 대상지역 설정

#### 2.1.1 계획의 특성

- 본 사업특성상 공사시 계획지구 부지조성 및 시설물 조성 등에 의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.

#### 2.1.2 입지적 특성

- 본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 일원으로, 총면적은 49,597㎡로 계획함.
- 계획지구에는 대부분 농경지와 일부 구릉지가 분포하고 있어, 사업시행시 토지의 지목변경, 부지의 절·성토 및 평탄화로 인한 지형의 변화 등 토지이용변화가 발생하는 바, 이에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.

#### 2.1.3 환경적 특성

- 공사시 부지개발로 인한 동·식물상의 서식지 훼손 및 개체 수 감소와 강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SS농도의 국부적인 증가로 주변 하천수질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.
- 또한,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건설장비가동 및 공사차량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영향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.

### 2.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

- 본 사업은 국지적인 구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계획지구가 위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일원을 입지 현황과 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.

제 2 장 대상지역 설정

<표 2-1>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

구 분		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	평가대상 지역 범위	
			시간적	공 간 적
자연 환경 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▶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·식물상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	공사시	▶ 진도군 및 군내면 일원 ▶ 중점평가 - 부지 반경 0.3km 이내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▶ 공사시 절·성토 작업에 따른 지형 및 지질 변화 ▶ 사토 및 비옥도 발생에 따른 영향 ▶ 생태축현황 및 사업시행시 영향	공사시	▶ 진도군 및 군내면 일원 ▶ 중점평가 : 계획지구 ▶ 환경질문헌조사 : 4개 지점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▶ 사업시행으로 계획지구 주변 위락 및 관광시설에 영향 ▶ 사업시행시 시설물 조성에 따른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변화	공사시	▶ 진도군 및 군내면 일원 ▶ 중점평가 : 부지 주변 조망점(근경·중경·원경)
	수환경의 보전	▶ 공사중 부지정지로 인하여 강우시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	공사시	▶ 계획지구 및 인근 수계 ▶ 환경질 문헌조사 - 하천수질 : 5개 지점
생활환경의 안전성	대기환경 기준의 부합성	▶ 부지정지 및 공사장비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	공사시	▶ 광역조사 - 부지 반경 1.0km 이내 ▶ 중점조사 - 부지 반경 0.3km 이내 ▶ 환경질문헌조사 : 4개 지점
	소음환경 기준의 부합성	▶ 공사시 장비 투입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·진동 영향	공사시	▶ 광역조사 - 부지 반경 1.0km 이내 ▶ 중점조사 - 부지 반경 0.3km 이내 ▶ 환경질문헌조사 : 4개 지점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▶ 공사시 건설폐기물, 폐유, 임목 폐기물,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발생	공사시 운영시	▶ 진도군 및 군내면 일원 ▶ 중점평가 : 계획지구
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 이용	▶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및 영향	공사시	▶ 진도군 및 군내면 일원 ▶ 중점평가 : 계획지구

# 제 3 장

---

## 토지이용구상

3.1 토지이용구상

3.2 설계기준 검토

## 제 3 장 토지이용구상

### 3.1 주거용지

- 진입부와 연계하여 남북으로 나누어 단독주택을 배치하고, 남북으로 형성된 대상지 지형을 활용하여 주택의 남향배치를 유도
- 주택의 남향배치를 유도하되 대상지 서측부의 해변경관이 차단되지 않도록 주택의 인동간격을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지를 계획
- 지역주민, 입주예정자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거용지 공간구성 적극 유도

### 3.2 공공시설용지

- 도로 : 대상지 내 교통의 흐름 및 택지로의 진입을 원활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 계획
- 녹지 : 주거단지의 쾌적성 및 경관 제고를 위하여 녹지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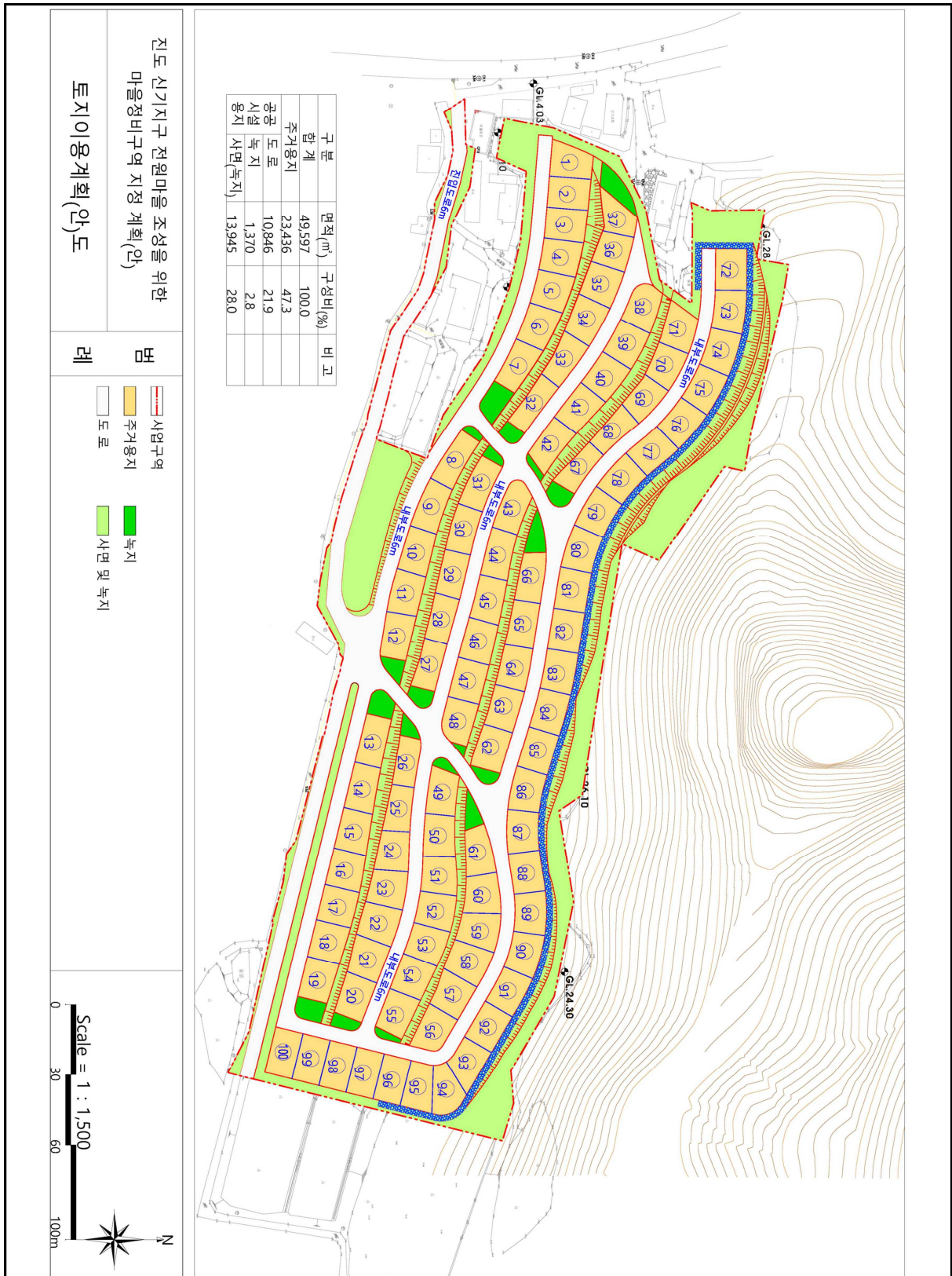
### 3.3 토지이용계획

- 주변의 지형지세, 마을의 현황, 도로 및 시설물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가로망 및 택지배치 계획을 세우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방식의 도입으로 마을전체의 경관형성 유지 및 쾌적한 주거공간이 창출되도록 계획

<표 3-1>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면적(㎡)	비율(%)
합 계	49,597	100.0
주 거 용 지	23,436	47.3
도 로	10,846	21.9
녹 지	1,370	2.8
사 면 ( 녹 지 )	13,945	28.0

<그림 3-1> 토지이용계획도



# 제 4 장

---

## 대안의 설정

- 4.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
- 4.2 대안의 설정

## 제 4 장 대안의 설정

### 4.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

- “대안” 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, 추진전략과 방법, 수요와 공급, 위치와 시기,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내에서 『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1』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.
- 본 계획에 대한 대안 설정은 『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제2013-171호』 [별표 2]에 의거하여 대안의 종류를 설정하였음.

<표 4-1>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

구 분	대안 선정방법	선 정
계획비교	◦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	◎
수단·방법	◦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	-
수요·공급	◦ 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◎
입 지	◦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	-
시기·순서	◦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시기 및 진행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-
기 타	◦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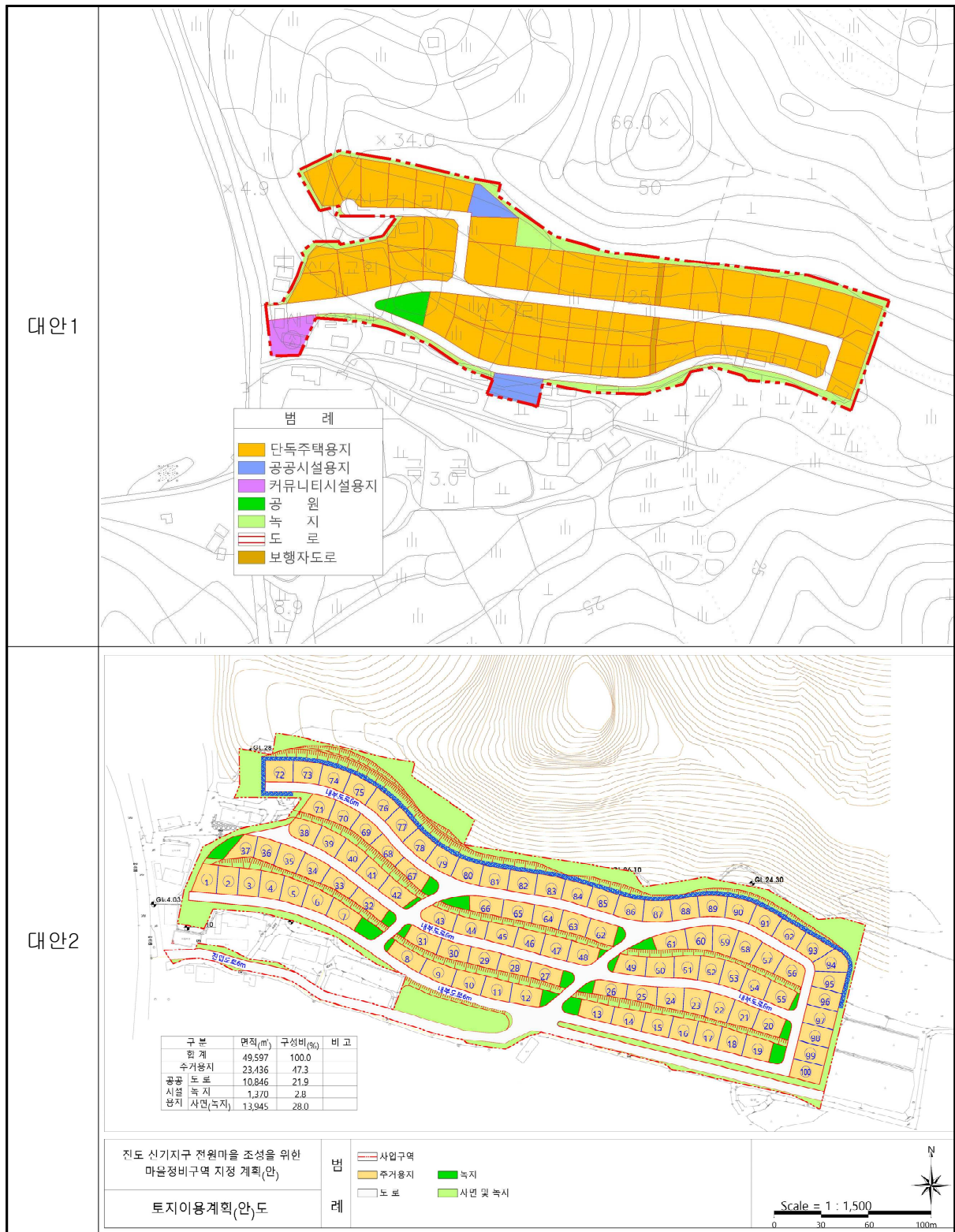
## 4.2 대안의 설정

- 본 과업은 진도군 군내면 영평리 일원에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, 대안의 종류중 입지에 따른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·검토를 실시하였음.
- 대안별 비교·검토결과, 토지의 활용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과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립한 “대안 1안” 을 계획안으로 설정함.

<표 4-2> 대안별 비교·검토 결과

구 분	대안1(당초)		대안2(변경)	
	면 적(㎡)	구성비(%)	면 적(㎡)	구성비(%)
합 계	40,304	100.0	49,597	100.0
주 거 용 지	26,439	65.6	23,436	47.3
도 로	6,607	16.4	10,846	21.9
녹 지	4,671	11.6	1,370	2.8
사 면 ( 녹 지 )	-	-	13,945	28.0
배 수 지	444	1.1	-	-
하 수 처 리 시 설	628	1.6	-	-
커 뮤 니 티 시 설	703	1.7	-	-
공 원	539	1.3	-	-
보 행 자 도 로	273	0.7	-	-

<그림 4-1> 대안의 비교



# 제 5 장

---

##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- 5.1 평가항목 설정
- 5.2 환경영향 예측·분석기법 및  
관련 자료

##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### 5.1 평가항목 설정

□ 본 사업시행시 계획특성 및 사업계획, 현지답사, 문헌조사를 통하여 계획지구 및 인접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출된 환경영향요소(행위·요인)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환경항목 중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.

<표 5-1> 평가항목 설정

평가항목		선정(안)	사	유
자연환경 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자연환경자산	○	▶ 계획지구 공사시 식물상의 훼손 및 동물 등의 서식지 이동, 토사유출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 등이 예상됨
		육상동·식물상		
		해양동·식물상		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	○	▶ 토공사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지형형상의 변화가 예상됨
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○	▶ 사업시행으로 인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발생	
수환경의 보전	지표수질	○	▶ 계획지구 공사시 부유토사의 유입, 오수발생, 운영시 비점오염물질의 증가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	
	해양수질			
생활환경 의 안전성	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	기상	○	▶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,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등이 예상됨
		대기질		
	소음환경기준의 부합성	소음·진동	○	▶ 계획지구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·진동 발생 및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소음영향이 예상됨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○	▶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
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	▶ 공사시 현장투입인력으로 인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,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폐유발생,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됨	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	▶ 계획지구 입지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 발생	

## 5.2 환경영향 예측·분석기법 및 관련자료

□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예측·분석에 사용된 기법, 내용, 관련자료 등은 다음 <표 5-3>과 같으며, 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경영향 예측을 실시하였음.

<표 5-3> 주요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기법

평가항목		예측·분석 기법		관 련 자 료
자연환경 의 보전	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	자연환경자 산	◦기존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분석·정리	◦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◦생태자연도
		육상·해양 동·식물상	◦현지·탐문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 ◦녹지자연도 산출	◦현지·탐문조사 및 문헌조사 ◦주변지역 생태계보고서
	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지형·지질	◦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지 형·지질 특성에 관한 조사	◦1:50,000 지질도, 한국지질 자원연구소
	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	경관	◦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 관변화예측	◦기존 및 통계자료 조사·분석 ◦현장 실측자료
	수환경의 보전	지표수질, 해양수질	◦수질 문헌조사 ◦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염물 질 발생량 예측	◦수질 현황 측정자료 ◦합리식(우수유출량 산정)
생활환경 의 안정성	환경기준 부합성	기상	◦해남기상관측소의 최근 10 년간 기상자료 분석	◦기상연보
		대기질	◦대기질 문헌조사 ◦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비 산먼지 발생 예측·분석	◦대기질 현황 측정자료 ◦대기확산모델
		소음·진동	◦소음·진동 문헌조사 ◦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도를 점음원 거리 감쇠식을 이용 하여 예측·분석	◦소음·진동 현황 측정자료 ◦건설기계류 소음특성, 국립 환경과학원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	◦진도군 환경기초시설현황	◦기존 및 통계자료 조사·분석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친환경적 자원순환	◦공사인부 및 장비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량, 건설폐기물 량, 임목폐기물량 등 예측	◦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 황, 환경부 ◦기존 및 통계자료 조사·분석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토지이용	◦계획내용을 참고하여 토지 이용변화에 따른 영향예측 분석	◦사업관련 계획보고서 ◦기존 및 통계자료 조사·분석	

# 제 6 장

---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

##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

- 본 “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” 와 같이 행정계획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함에 있어 『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』에 의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야 함.
- 그러나, 본 계획지구의 경우 편입면적(49,597㎡)이 60,000㎡ 미만이므로,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은 실시하지 않았음.

<표 6-1>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근거

환경영향평가법	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<p>제8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)</p> <p>① 환경부장관, 계획 수립기관의 장,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(이하 "승인기관의 장"이라 한다)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관련 사항</li> <li>4.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</p> <p>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이 장에서 "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"이라 한다)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(이하 "개발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<b>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 미만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b></p>	<p>제8조(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)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<b>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.</b></p>

자료) 환경영향평가법, 2020.1, 환경부